

기조발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의 과제와 전망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1.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스며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양식으로 인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족 정체성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아태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이 지역이 예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 역사·사회적 배경 속에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유산을 발전시켜 왔다.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초원에서 대양(大洋)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 지역 국가들은 다민족 국가로서 이들 민족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번성해왔다. 또 불교·힌두교·이슬람교와 토착 민속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까닭에 아태지역은 세계 문화다양성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47% 정도가 아태지역이 보유한 종목이다.¹ 등재 종목의 수가 절대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분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태지역이 무형문화유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II.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요소

무형문화유산은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다양성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한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전쟁과 경제 개발로 인해 유서 깊은 건축물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유형문화유산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래서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던 반면에 무형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유·무형문화유산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유형과 무형 사이에 서열이 조성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그동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유형문화유산에 치우쳐 있는 동안, 인류의 또 하나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은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나 전승에 결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업화와 근대화의 높은 파도는 아태지역에도 예외없이 밀려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문화는 스스로의 전승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무형문화유산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도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보통 세계화는 서구화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자국의 전통문

1_ 2010년 11월 등재 종목 기준.

화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국 문화가 유입될 경우 자칫 문화 획일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서구에서 창조된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소비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 어디를 가나 똑같은 음악과 춤을 즐기고, 같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화의 막강한 영향력에 맞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다양한 인류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전통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현상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물론 인기가 있는 유산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로한 보유자 몇 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이상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전승이 단절되어 버린 무형문화유산도 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경제 발전의 논리에 밀려 전통문화가 소멸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경제 발전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경제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주지하다시피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193개 회원국이 이 분야의 국제적 정책들을 활발하게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호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약 채택 이전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핵심적 논의로는 1989년 채택된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와 지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걸작’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 제고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가치성 제고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긴급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목록은 협약의 정신에 따라 기존에 세계 유형문화유산에서 강조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²와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을 지양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국제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이 채택되기까지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1989년 권고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강력한 국제 규약의 채택을 추진했다. 그렇게 탄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기로 결의하는 국제 합의 문서이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보호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먼저 협약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³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⁴과 별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사업 및 활동 목록⁵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보호목록에 16종목, 대표목록에 233종목이 등재되어 있고, 모범사례로 3건이 등록되어 있다.⁶ 이들 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국은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외에도 목록작성과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참여를 주제로 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마

2_ Outstanding Universal Value.

3_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4_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5_ Register of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6_ 2010년 제5차 정부간위원회까지 결정된 현황임(제6차 정부간위원회 결과 불포함).

련하고 있다. 이런 회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카테고리 2기구는 유네스코와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회원국 정부가 설립을 제안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설립을 승인하였다. 무형 문화유산 분야에는 남미와 동유럽 지역에 각 1개의 센터와 아태지역에는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이란 4개국에 각 1개씩 총 6개가 설립된다. 아태지역에 설립되는 센터들의 주요 담당 역할은 각각 정보 및 네트워킹, 훈련, 연구이며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카테고리 2 기구는 유네스코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그간의 보호 활동이 지니는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기존의 유형문화 위주의 문화 개념에서 무형문화유산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높였다는 점과 둘째, 그동안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던 비서구 지역의 참여를 높여⁷ 문화유산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IV.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개인, 집단,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지역 사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보호 역량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보유자, 지역사회, 정부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효과

7_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37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16개국, 동유럽 24개국, 아메리카·캐리비안 27개국, 아시아 태평양 24개국, 아프리카 31개국, 아랍 15개국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 합의 문서로서 당사국은 영토 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자국의 문화만 내세우는 국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약에서는 국제협력을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 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까지 포함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함께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도 하고, 여러 문화들이 한곳에 공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다양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은 자칫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꼭 분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고한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공동 협력의 활성화는 지역 불균형 등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와 소지역 단위로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인류의 공동 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8_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5장 국제협력 및 원조.